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
공고합니다.

2024년 04월 19일

홍천읍장



인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장 *훈	장 *훈 1978-10-07	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꽃외로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4-04-19